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제안사유

사하구 직제신설에 따른 을숙도 문화회관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대상기관에 포함하여 의정업무의 편의를 도모코자하는 내용임.

2. 주요골자

- 을숙도 문화회관 소관업무 감사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포함.
(안 제5조 제1항 “3호” 신설)

3. 관계법령

-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1조 및 제12조, 제13조

4. 검토의견

이번 조례 개정안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에 의거 직제 신설된 을숙도 문화회관의 소관업무에 대하여 본조례 제5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에 추가함으로써 효과적이고 내실있는 의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개정안과 같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 두 천